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93

발의연월일: 2025. 5. 7.

발 의 자:백혜련·정동영·박지원

이수진 • 박민규 • 부승찬

이재관 · 신정훈 · 조계원

진선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,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.

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 러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 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4조의2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4조의2제1항 중 "관할법원"을 "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법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14條의2(체포와 구속의 적부	第214條의2(체포와 구속의 적부
심사)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	심사) ①
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, 법정대	
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	
매나 가족, 동거인 또는 고용주	
는 <u>관할법원</u> 에 체포 또는 구속	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
의 적부심사(適否審査)를 청구	<u>을 발부한 법원</u>
할 수 있다.	
② ~ ⑭ (생 략)	② ~ ⑭ (현행과 같음)